

개도국 지역이슈 리포트

【지역이슈분석 2011-16】

2011. 12. 8.

이란 핵 문제 관련 최근 동향

목 차

I. 이란의 핵 개발 현황	1
II. 최근의 국제적 대 이란 제재 내용	3
III. 전망	7



■ 이란은 1960년대 이후 UN의 4차례 경제제재 등 국제 사회의 압력 속에서도 주권국으로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권한을 주장하며 핵 개발을 지속하여 왔음. 이하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011년 11월에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제기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것을 계기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대 이란 제재동향과 전망을 정리하고자 함.

I. 이란의 핵 개발 현황

1. 국제 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핵 개발 지속

□ 2010년부터 농축 우라늄 농도 변환

- 1960년대에 핵 개발을 시작한 이란은 그간 저농축우라늄(농도 3.5%)만을 생산하여 왔으나 2010년 2월 이후 테헤란의 의료용 원자료 가동에 필요한 연료를 조달한다는 명목으로 농도 20%의 농축우라늄 생산에 착수하였으며 2011년 10월에는 암 치료를 목적으로 농축우라늄 70kg(농도 20%)을 생산했다고 발표하였음.
- 농축우라늄은 원자력발전의 연료로 사용되나, 농도변환작업을 통해 농도를 높일 경우 핵무기를 제조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음. 전문가들은 농도 90%의 고농축우라늄 (U^{235} 의 중량 백분율이 75% 이상 93% 미만인 농축우라늄) 약 25kg으로 핵무기 1기를 제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국제 사회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며 UN의 4차례에 걸친 대이란 경제제재 조치 등 압력을 가하였으나, 이란은 원자력발전과 치료 등 평화적 목적을 위해 핵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핵 개발 의지를 고수하고 있음.



- UN 제재조치의 주요 내용
 - UNSCR 1737(2006): 핵·미사일 관련 전략물자 금수조치(일부 제외), 금수품 관련 지원 금지
 - UNSCR 1747(2007): 재래식 무기 7종의 제공 및 관련 지원 자제
 - UNSCR 1803(2008): 핵·미사일 관련 모든 전략물자 수출금지, Bank Melli 등과의 금융 거래 주의, 이란 국영선사(IRISL) 등 화물검사
 - UNSCR 1929(2010): 재래식 무기 수출금지, 화물검사 강화, 이란 혁명수비대 등 제재

2. IAEA, 이란 핵개발 보고서 발표(2011년 11월 8일)

□ 기폭장치 및 핵탄두 소형화 기술 개발 의혹 제기

- 중북부의 콤(Qom) 인근에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을 건설하고, 관련 과학자들을 테헤란 주변의 대학, 첨단 응용기술 개발처 등에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함.
- 2008~09년에 핵반응 기폭장치를 개발하기 위해 컴퓨터로 모의 핵실험을 실시했고, 2000년부터 수도 테헤란에서 30km 떨어진 파르친 비밀군사기지 내에 대형 격납용기를 만들어 기폭장치를 실험해 왔다고 지적함.
- 핵무기에 사용된 고성능 폭약 실험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샤하브3'의 핵탄두 탑재 기술 개발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었음.

□ IAEA 보고서에 따른 이란의 움직임

- 이란은 동 보고서가 주로 서방측 정보를 통해 조작된 것으로서 근거 없다고 일축하고, 서방국의 자국 핵시설 공격을 가정한 방공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 2011년 11월 20일에 이란 동부지역에서 최고 경계태세 하에서 최신 방공 미사일시스템과 각종 레이더시스템 기동, 영공 침입에 대비한 전술작전, 핵시설 공격 상황에 대비한 훈련 등이 실시되었음.
- 2011년 12월에는 자국 영공을 침범한 미국의 무인 정찰기 RQ170을 격추하였고 이란군은 영공 침범에 대한 대응이 국경 내로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였음.



II. 최근의 국제적 대 이란 제재 내용

1. 미국

- 의회는 2011년 2월에 ‘이란 투명성·책임법안(Iran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Act of 2011)’을, 5월에는 ‘이란 내 인권, 민주주의 촉진을 위한 법안(A bill to promote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 Iran)’을 발의하였음.
- 이란의 인권탄압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 기술의 이전과 활동 관련자에 대한 조사 및 제재(자산 동결)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음.
- 2011년 5월 23일에 ‘이란·북한·시리아 제재확대 법안(A bill to expand sanctions imposed with respect to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North Korea, and Syria, and for other purposes)’이 발의되었음.
- 이란 국경 밖에서 진행되는 원유개발사업이라도 이란 정부가 핵심파트너 또는 투자자로서 이란이 동 사업을 통해 원유개발 관련 기술 장비를 획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공동 참여자에게 제재를 부과함.
- 제재 대상이 되는 이란 정유부문 지원행위의 범위가 확대되고 수송시설(항만, 도로, 철도 등) 지원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됨.
- 이란 중앙은행(CBI)에 대한 감독 및 이란 혁명수비대(IRGC)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음.
- 2011년 11월 IAEA 보고서 발표 후 행정명령 1359호, 행정명령 13382호, 애국법 section 311을 통해 이란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지역’으로 지정하고,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11개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하였음.
- 행정명령 1359호의 제재기준은 2010년 ‘포괄적 이란제재법(The Comprehensive Iran Sanctions and Accountability and Divestment Act)*’에 비해 강화되었음.
- 이란 석유화학품목 생산의 확대·유지에 직접 기여하는 물품,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장가격이 25만 달러 이상이거나 12개월 합계액이 100만 달러 이상인 거래
- 이란의 석유자원 개발능력의 유지·확대에 기여하는 물품,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시장가격이 100만 달러 이상이거나 12개월 합계액이 500만 달러 이상인 거래



* 2010년 포괄적 이란 제재법의 제재기준

- 이란 석유화학품목 생산의 확대·유지에 직접 기여하는 물품,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장가격이 100만 달러 이상이거나 연간 총 500만 달러 이상인 거래
- 이란의 석유자원 개발능력의 유지·확대에 기여하는 물품,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시장가격이 2,000만 달러 이상(또는 건당 500만 달러 이상 합계 연 2,000만 달러 이상)인 거래
- 국무장관은 행정명령 13590호 위반행위 발견 시, 여타 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당사자에 대한 외환거래, 은행거래, 자산거래, 미국수출입은행 용자, 미국 수출신용장, 미국 내 수입, 미국 금융기관으로부터의 1,000만 달러 이상 대출 등을 금지시킬 수 있고, 미 정부 조달계약 금지, 금융기관에 대한 미 정부 기금의 주 거래기관 지정 금지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행정명령 13382호는 11개의 개인·단체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자로 추가 지정하여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인과의 거래를 금지함.
- 추가 제재대상: The Nuclear Reactors Fuel Company*, Noor Afzar Gostar Company*, Fulmen Group*, Yasa Part, Modern Industries Technique Company, The Iran Centrifuge Technology Company, Parto Sanat, Paya Partov*, Neka Novin*, Simatic Development Co.*, Javad Rahiqi(개인)
- ※ *는 현재 우리나라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이란 금융제재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단체임.
- 미국 재무부는 애국법 311조에 의거, 중앙은행을 비롯한 이란 금융기관 전체를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였음.

2. 기 타

- 영국은 자국 금융기관들과 모든 이란 금융기관(이란 중앙은행 포함) 간의 거래·송금 등 업무를 중단하였음. 특히 이란 중앙은행은 석유수출대금 결제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어 이란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됨.
- 이에 이란에서는 반정부 시위대 수백 명이 11월 29일에 테헤란 주재 영국대사관에 난입하여 영국 국기를 불태우고 대사관 직원들을 인질로 억류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음.
- 캐나다도 이란과의 금융거래를 단절하고, 석유·가스 등 에너지 부문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의 수출을 금지시켰음.



- 프랑스 역시 전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이란 제재에 대한 찬성의사를 표시하였음.
 - 중국과 러시아는 대 이란 추가 제재에 반대하고 있음.
 -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UN 차원의 제재조치는 불가능한 실정임.
 - 특히 중국은 미국 등의 추가 제재 이후에 이란과의 무역량이 급증하면서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음.
 -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이스라엘의 핵시설 공격 경고를 받고 있는 이란에게 상하이협력기구(SCO)* 가입을 적극 제안하고 있음.
- * SCO는 2001년에 중국 상하이에서 출범한 다자간 협력기구로서, 정식 회원국은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의 6개국임. 러시아는 SCO에 미국과 적대적인 국가들을 가입시킴으로써 이 지역의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음.

3. 우리나라

- 우리나라는 2010년 9월에 UN 안보리 결의 1929호의 결정·권고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해 금융, 무역, 운송, 에너지 분야의 대 이란 추가 제재조치를 발표하였음.

<표 1> 2010년 우리 정부의 대 이란 추가 제재 조치

구 분	내 용
금융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제재 대상자 추가 지정(단체 102개, 개인 24명) ▪ 금융거래 사전허가제 및 신고제 도입 ▪ 신규지점 개설 금지 ▪ 코레스관계 신설 금지, 기존 코레스관계 종료 ▪ 국채 매매 금지 ▪ 보험 및 재보험 거래 금지
무역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이란 수출보증 축소 ▪ 이중용도 품목 등 수출 금지
운송·여행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지품목 적재 의심 선박·항공기 검색 강화 ▪ 금지품목 적재 의심 선박 및 화물항공기 지원 금지 ▪ 화물항공기의 국내 공항 접근 금지 ▪ 제재대상자의 여행제한
에너지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가스 부문 신규투자 금지



- 이외에도 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 1929호상 이란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활동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명시된 Bank Mellat의 서울지점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2개월 영업 정지 조치를 결정하였음.
- 이후 우리 정부는 국내 기업의 이란과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 은행과 우리은행에 이란 중앙은행의 원화 결제 계좌를 개설하여 수출입 대금의 결제 리인을 확보하였음.
- 국내 수입업체는 이란 측에 지급할 대금을 이란 중앙은행의 원화 결제 계좌에 입금하고, 수출업체는 이란 측으로부터 수령할 대금을 이란 중앙은행의 원화 결제 계좌에서 출금하는 방식으로 결제가 진행되고 있음.
- 2010년 9월 30일 이란 중앙은행의 원화 계좌가 개설되었으며, 2010년 10월 18일 원화 계좌를 통해 원유수입대금이 최초로 입금되었음.
- 이란 관련 자금거래는 원화 결제만 가능하며, 원화 결제가 가능한 이란 은행은 총 10개임. (기업은행 6개, 우리은행 6개: 중복 2개)

<표 2>

원화 결제 거래 가능 이란계 은행

우리은행 (6개)	기업은행 (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nk Tejarat ▪ Bank of Industry and Mine ▪ Bank Keshavarzi ▪ Parsian Bank ▪ Bank Eghtesad Novin ▪ Karafarin Ban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nk Tejarat ▪ Bank of Industry and Mine ▪ Bank Maskan ▪ Saman Bank Corp. ▪ Bank Pasargad ▪ Sarmaye Bank

- 미국이 지난 12월 5일에 우리나라에 대 이란 추가 제재에 동참하도록 공개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정부는 이를 검토 중임.
- 우리나라는 대 이란 무역 규모가 석유와 가스, 건설과 조선 등 핵심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연간 약 120억 달러에 달하는 이란의 제2대 교역국임. 또한 우리나라의 1965~2010년의 대 이란 건설수주액은 약 119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이란산 원유 수입액은 2010년 기준 56억 달러로 우리나라 총 원유수입액(690억 달러)의 약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란산 원유는 평균 구입단가가 배럴당 102달러로 전체 평균단가(105달러)보다 낮아 최근 수입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금년 1~11월 이란산 원유 수입량은 7,423만 배럴로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 UAE에 이어 5위를 기록함.

III. 전망

□ 국제적 압력 속에서도 이란의 핵개발 의지 고수 전망

- 이란의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핵 개발 사업에서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을 것이며 이란을 공격하는 어떤 국가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로스탐 카세미 석유장관이 필요하다면 원유를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대응할 가능성이 제기됨. 이란 남부와 오만 북부 사이에 위치한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량의 40%가 통과하는 요충지임.

□ 이스라엘의 공격 가능성

- 이스라엘은 2005년 이후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이전에 핵시설을 공습하겠다고 공언하여 왔으며, 특히 IAEA 보고서가 발표된 후에는 공격 가능성을 연일 경고하고 있음.
- 이스라엘의 핵시설 공격은 이란의 보복 가능성 증대 및 이로 인한 중동 지역의 불안정, 이란의 NPT 탈퇴 및 국제 유가 상승 등 커다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 우리나라의 대이란 제재 전망

- 미국의 공개적 이란 추가 제재 동참 요청에 따라 추가제재를 검토 중이나, 추가 제재는 이란의 보복성 대응을 초래하여 우리 기업의 정유·석유화학 플랜트, 조선 수출 둔화 및 이란에 진출해있는 민간 기업들의 활동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고심하고 있음.



- 정부는 이란에서 수입되는 석유화학 제품이 연간 약 3억 달러 규모에 불과해 우리 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란과 북한의 핵 협력

- 북한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핵심 기술인력 수백여 명이 이란의 주요 핵·미사일 관련 시설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져 양국 간 핵·미사일 개발 협력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됨.

□ 핵 문제 해결 어려울 전망

- 현재로서는 이란 핵 문제의 해결 전망은 지극히 불투명하며 협상을 통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미국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도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란이 핵 문제와 관련하여 진지하게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조짐이 없어 지속적인 제재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작성 : 해외경제연구소 국별조사실
조사역 박유정 (3779-5727)
yjpark@koreaexim.go.kr